

#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57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7. 5. .  
발 의 자 : 이민근 의원외 6인

## □ 개정이유

- 동일 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교섭단체 제도 도입과 구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전에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협의하여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, 조정하고 이를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의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과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.(안 제2조)

## 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## 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 □ 관계법령발췌

- 국회법 제33조

## □ 기타 참고사항

-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-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#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”를 “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제2조의 2로 하고,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교섭단체의 구성) ①의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·날인한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
③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조의 2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

1. 의회행정위원회 7명
2. 경제사회위원회 7명
3. 도시건설위원회 7명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 신설 &gt;</u></p> <p>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 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의회행정위원회 7명</li> <li>2. 경제사회위원회 7명</li> <li>3. 도시건설위원회 7명</li> </o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교섭단체의 구성) ①의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</p> <p>②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·날인한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자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</p> <p>③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2조의 2(상임위원회의 설치) (현행 제2조와 같음)</p>

#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571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8. 3. 28.  
제 안 자 : 의회행정위원장

## □ 수정 이유

- 의회관련 조례·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있게 사전 협의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
- 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을 각 상임위원회에 맞게 재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## □ 주요 골자

-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및 의회관련 조례·규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위원 정수 규정을 신설함.(안 제2조의2)
-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, 경제사회위원회, 도시건설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.  
(안 제3조)
-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.(안 제4조)

**개정조례안 : 별첨**

**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**

**관계법령 발췌**

- 국회법 제33조, 제39조
- 지방자치법 56조, 62조

**기타 참고사항**

-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-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#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의2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 7명
2. 기획행정위원회 7명
3. 경제사회위원회 7명
4. 도시건설위원회 7명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

- 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- 나.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다.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 · 기타 의회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

2. 기획행정위원회

- 가. 공보담당관실, 감사담당관실,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나. 창조경제국(기획예산과, 투자경영과, 문화관광과)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다. 정보문화사업소, 외국인주민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라. 구청(행정지원과, 민원봉사과, 세무과) 소관에 속하는 사항

3. 경제사회위원회

- 가. 창조경제국(경제정책과, 생명산업과), 주민생활지원국(주민생활지원과, 사회복지과, 가족여성과, 스포츠마케팅과, 지구환경과)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나. 상록수보건소, 단원보건소, 산업지원사업소, 클린사업소, 농업기술센터,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,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, 와~스타디움경영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다. 구청(주민생활지원과, 산업위생과) 소관에 속하는 사항

#### 4. 도시건설위원회

- 가. 주민생활지원국(푸른녹지과, 시민공원과), 도시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나. 상하수도사업소, 미래도시사업소,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다. 구청(도시주택과, 도시미관과, 건설교통과)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제4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다만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될 때 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.

# 조문대비표

원안	수정안
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	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(생략)	제1조(목적) (원안과 같음)
제2조(교섭단체의 구성) ① ~ ③ (생략)	제2조(교섭단체의 구성) ① ~ ③ (원안과 같음)
제2조의 2(상임위원회의 설치) <u>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</u> <u>&lt;신설&gt;</u> <u>1. 의회·행정위원회 7명</u> <u>2. 경제·사회위원회 7명</u> <u>3. 도시·건설위원회 7명</u>	제2조의 2(상임위원회의 설치) <u>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</u> <u>1. 의회운영위원회 7명</u> <u>2. 기획행정위원회 7명</u> <u>3. 경제사회위원회 7명</u> <u>4. 도시건설위원회 7명</u>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략) <u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u> <u>&lt;신설&gt;</u>  <u>1. 의회·행정위원회</u> <u>가.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·기타 의회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</u> <u>나.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<u>다. 행정지원국, 공보담당관실, 감사담당관실, 기획경제국(기획예산과, 문화관광과)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<u>라. 중앙도서관,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	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원안과 같음) <u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u> <u>1. 의회운영위원회</u> <u>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</u> <u>나.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<u>다.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·기타 의회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</u> <u>2. 기획행정위원회</u> <u>가. 공보담당관실, 감사담당관실,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<u>나. 창조경제국(기획예산과, 투자경영과, 문화관광과)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<u>다. 정보문화사업소, 외국인주민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<u>라. 구청(행정지원과, 민원봉사과, 세무과)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

원 안	수 정 안
<p><u>2. 경제·사회위원회</u></p> <p>가. 기획경제국(지식산업과, 지역경제과, 농어촌 진흥과),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나. 상록수보건소, 단원보건소, 산업지원사업소, 농업기술센터,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, 여성 복지회관, 공원관리사업소,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, 사활린동포지원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	<p><u>3. 경제사회위원회</u></p> <p>가. 창조경제국(경제정책과, 생명산업과), 주민생활지원국(주민생활지원과, 사회복지과, 가족여성과, 스포츠마케팅과, 지구환경과)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나. 상록수보건소, 단원보건소, 산업지원사업소, 클린사업소, 농업기술센터,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, 사활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, 와~스타디움경영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
<p><u>3. 도시·건설위원회</u></p> <p>가.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나. 상하수도사업소, 청소사업소, 차량등록사업소, 건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	<p><u>4. 도시건설위원회</u></p> <p>가. 주민생활지원국(푸른녹지과, 시민공원과), 도시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나. 상하수도사업소, 미래도시사업소,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다. 구청(도시주택과, 도시미관과, 건설교통과)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
<p>제4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①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(이하 “상임위원”이라 한다)이 된다.</p> <p>&lt;단서 신설&gt;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① ----- . ----- . 다만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</p>